토론문 1

중국 기업도산법의 새로운 동향과 시사점 - 사법해석(1)을 중심으로

경북대 민사실무 교수 김 성 균

관련 사법해석을 위주로 중국 기업도산법의 새로운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陳景善 교수님의 논문 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간단한 의견을 밝히고,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 6.부터 시행된 중국의 현행 기업파산법 이전에는 1986년부터 〈중국기업도산법(試行)〉이 기업파산 관련 기본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기업도산법(試行)〉의 시기에는 중국의 기업파산 실무에 있어서는 법원이 주도하는 도산절차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또는 workout과 비교되는 정책적 파산이 국유기업에 주로 적용되었고, 〈중국기업도산법(試行)〉의조문수가 적고 매우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의하여 주도되는 整頓제도가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장경제의 중요한한 축인 예측가능하고 질서 있는 도산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오랜 동안의 어려운 입법과정을 거쳐,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이 2007년부터 시행된 것은 도산제도와 시장경제법질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의 지적과 같이, 현행도산법이 실시된 이래로 중국의 도산사건의 受理건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도산기업의 수가 감소한 때문이 아니라, 법률제도의 미비 등으로 빚어진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법체계에 관련된 비판으로서 흔히, 수리의 어려움, 판결의 어려움, 집행의 어려움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산제도와 관련된 수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위 사법해석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한 陳景善 교수님의 발표문을 통하여 사법해석의 제정배경 등에 대하여 한층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문과 관련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발표자의 의견을 청하고 자리를 같이 하신 학자분들과의 토론에 제공하기 위하여 질문과 의견요청을 하겠습니다.

[1] 중국의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스스로 각급 법원의 법률적용을 통일하거나 하급법원 등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서, 특정사건에의 적용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규로서의 보편적인 기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파산법을 적용하는 사건의 수리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절차 문제를 사법해석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중국의 제도는 한국의 법학자들에게 아직 낯선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본질적으로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인데, 판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법 해석의 제정을 통하여 법률보충 또는 실질적인 입법작용을 하는 것에 대한 발표자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 [2] 수리신청 등 기업파산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기업파산법을 적용하는 기업파산절차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회중개기구가 가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 [3] 한국 중앙지방법원은 도산부를 따로 설치하여 회생 및 파산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파산 사건심리와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다른 사법해석에서 도 '전문적인 파산사건재판부를 두거나 특정 합의부를 지정하여 파산사건심리를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도 파산사건 등 전문성이 강한 사건은 법원의 특정 재판부에서 주로 심리하게 될 것인데,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立案庭에서 심사하여 사건을 수리한 후에 비로소 담당재판부의 심리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파산에 대한 입안 정과 파산사건재판부와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 [4] 발표자의 논문 II. (3) 부분에 "기업등기관리조례에 의하면 연속 2년간 공상관리국의 연간 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 많은 기업들은 도산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지 않고 기업등기관리조례에 의해 채무를 도피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면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영업허가증이 취소되는 때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채무가 있는지를 공상관리국이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요?
- [5] 발표문의 주제인 사법해석(1)이 시행된 지 9개월 정도 경과하였는데, 위 사법해석(1)에 따라 사건수리가 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